

혁신제품

혁신제품 핵심 요약

지정신청 쉽고 빠르게!

이 디자인은 미리캔버스에서 제작되었습니다.

접수 후 진행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세요



혁신제품 지정 단계

- **1차 서류 검토**
신청 접수한 서류를 담당자가 확인
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보완요청
- **혁신성평가**
각 분야 전문위원 5~9인을 선정,
신청 제품에 대해 평가
- **2차 서류 제출 / 검토**
혁신성평가 합격 업체는 2차 서류 제출 진행
매출증빙, 특허적용확인서, 규격서, 현장실사 진행
- **지정심의 (조달정책심의위원회)**
최종 지정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결정
접수마감일 기준 약 3개월 가량 소요 예상
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

혁신제품 지정받으면 이런 점이 좋아요!

혁신제품 지정 시

- **3년 간 수의계약 가능**
제품에 지정된 특허(실용신안), 규제샌드박스(임시허가, 실증특례)
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3년 이내 정해진 기간까지 지정기간 지정
- **혁신장터에 상품등록**
지정된 제품(식별번호 기준)만 혁신제품전용몰에 등록
- **구매면책**
각 기관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
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- **기관평가반영**
기관별 총 물품구매액의 1.6%(지자체 0.8%)
구매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
- **우수제품 신청자격**
시범구매 테스트에서 성공판정 시
우수제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됨

혁신제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!

혁신제품 구분



● FT1 (우수연구개발)

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&D 결과물
(제품화에 성공)

● FT2 (혁신시제품)

상용화 전 시제품 (조달청 지정)
혁신장터 내 업체신청공고를 통해 신청 접수
(수요자제안형과 공급자제안형으로 나누어 접수)

혁신장터 > 혁신시제품 지정
> 업체지정신청공고

● FT3 (기타 혁신제품)

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
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

잠깐!

FT1 ~ 3 모두가 혁신제품으로
지정 시 혁신장터에 상품등록이 가능합니다

직접생산하는 국내제조기업으로 혁신시제품
마감일까지 아래 2개 조건을 모두 충족 필수!

혁신시제품 대상

● TRL 7~9단계 해당

기술개발단계(TRL) 7~9단계에 이르는 제품으로
신청제품에 대한 특허(실용신안) 필수

● 상용화 전 시제품

상업적 거래가 없는 상용화 이전의 제품이 대상
(단, 제품단가 10배 이내 매출
또는 최초 매출이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허용)

잠깐!

※ 이전에 혁신제품 지정되었거나, 우수조달
물품, 우수공동상표물품, 다수공급자계약
물품과 동일한 경우 심사 및 지정 제외됨

※ 동일 식별번호로 4회 이상 혁신성평가에서
탈락한 경우 심사 및 지정 제외됨

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
제조/납품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해요!

신청 자격



- **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보유**
제안 제품, 제품+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
제조와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!
※ 특허(실용신안) 권리자 (전용실시권자 포함)
- **제조물품으로 등록**
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하며,
신청제품에 대한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.
- **제조공장이 없다면?**
기술만 보유한 기업(추진기업)도 신청할 수 있어요.
생산시설 보유기업과 **협업체**를 구성해서 신청하세요!

추진기업(기술보유기업)+참여기업(제조기업)

제조물품 등록 가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!

단독 VS 협업

단독참여 (자체 제조설비 보유 시)

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조 등록이 가능한 경우

협업체 참여 (자체 제조설비 없을 시)

신청 제품에 대한 기술은 있으나 자체 제조설비가 없다면(추진기업) 신청기업
해당 제품 제조가 가능한 제조기업(참여기업)과 협업체로 신청가능

잠깐!

- ※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제조설비를 입증한 업체만 식별번호 부여 가능
- ※ 참여기업(제조기업) : 단순 제조공장 역할로 제안제품에 대해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, 식별번호 등록 필요
- ※ 협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추진기업(신청기업)으로, 혁신시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

모두 해당되는 준비서류 + 각 업체에 해당되는
서류 모두를 준비해주세요!



신청 준비서류

● 기본 준비서류 (모두 해당)

- ① 특허증 (실용신안 등록증), 등록원부, 등록공보 모두
: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특허 등록 완료 건만 신청 가능
: 등록권리자 - 법인사업자는 법인명,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
: 공동권리자인 경우 - 약정서 제출
- ② 혁신제품 제안서
- ③ 혁신제품 규격서

● 추가 제출 (해당 시)

- ① 공공기관 기술이전 시 기본 준비 서류 외 업체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
- ② 협업체 신청 시 : 협업승인신청서 또는 협업기업선정확인서
- ③ 기술성능비교표
- 신청업체에서 이미 동일 세부품명으로 지정받은 제품있는 경우
: 혁신제품, 우수조달물품, 우수공동상표 물품,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
동일 세부품명으로 지정된 계약, 제품이 있는 경우 제출
: 협업체에 해당 내용 있는 경우에도 제출

추가서류 제출 시 여기에 해당된다면?

공공기관 기술이전

● 특허 등록 전(출원 중인 경우)

출원번호통지서, 기술이전업무협약서,
(필요 시)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사용권 설정 확인서, 사유서 등

● 특허 등록 후

특허증, 등록원부, 등록공보, 기술이전업무협약서

※ 공공기관 기준

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공공연구기관
에 해당되는 곳이어야 함

잠깐!

혁신제품 구매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
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(전용실시권 또는 통
상실시권) 등록 완료 필수